

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적용할 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금년 10월 31일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.
-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부천시의회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급기준이 결정된 사안으로
- 부천시의회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바와 같이 지급 기준금액을 조정하고자 함.
- 주요 골자는
 - ▶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,
 - ▶ 월정수당을 현행 1백8십1만6천 원에서 2백5십3만원으로 조정하였고,
- 기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의 개정과, 부천시 조례규칙 용어 표준화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보완하였음.

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1호
의결 년월일	2007.12.21

제안년월일 : 2007년 12 월 11 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통보(2007. 10. 31.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금액을 조정함.(안별표 1)
 - 월정수당: 당초 1,816,000원 → 변경 2,530,000원

□ 그 밖의 참고사항

- 부천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 결정통보서: 붙임

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2조”를 “제33조”로 하고, “제15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3조에 따라”로 하며, “지급에 관하여”를 “지급에”로 한다.

제2조 제1항 중 “월정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”를 “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명에 의하여”를 “명에 따라”로 하며, “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지급한다”를 “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각각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예에 의한다”를 “예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1]

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2조 관련)

(단위: 원)

합 계	의 정 활 동 비			월정수당
	소 계	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	
<u>3,630,000</u>	1,100,000	900,000	200,000	<u>2,530,000</u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제33조----- <u>제33조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지급에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지급기준 등) ①의원에게는 매월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.</p>	<p>제2조(지급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다.</p>
<p>②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지급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명에 따라----- ----- ---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.</p>
<p>③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부천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	<p>④ 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부천시공무원의 <u>예</u>에 의한다.</p>	<p>제3조(준용) ----- -----<u>예</u>에 따른다.</p>